

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(안)

2025. 4.

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

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

제안연월일 : 2025. 4. .

제 안 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제안이유

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,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감사기간은 2025. 6. 5. ~ 6. 13. (9일간)로 한다.
-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 복지동행국, 환경녹지국, 도시관리국, 보건소, 동 주민센터, 마포복지재단으로 한다.
- 감사반 편성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(9명)으로 한다.
- 감사장소는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실, 동 주민센터 등으로 한다.

3. 관계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, 제5조 등

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(안)

1. 감사의 목적

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그리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,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감사기간 : 2025. 6. 5.(목) ~ 6. 13.(금) <9일간>

3. 감사실시 대상기관(부서)

- 복지동행국, 환경녹지국, 도시관리국, 보건소, 동 주민센터, 마포복지재단

4.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

구 분	감 사 위 원	대상기관	감사장소	전문위원	사무직원
복지도시 위 원 회	위원장 및 부위원장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전원	복지동행국	복지도시 위원회실	장홍용	최은영
		마포복지재단			
		환경녹지국		신준호	김자영
		도시관리국			
		보 건 소			
		동 주민 센터	동 주민센터	장홍용	최은영

5. 감사일정

일 정	감 사 대 상	비 고
2025. 6. 5.(목)	○ 마포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○ 복지동행국 행정사무감사 - 복지정책과 - 실뿌리복지과	
2025. 6. 9.(월)	○ 복지동행국 행정사무감사 - 어르신동행과 - 장애인복지과 - 가족정책과	
2025. 6. 10.(화)	○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- 용강동 주민센터 - 합정동 주민센터	
2025. 6. 11.(수)	○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- 깨끗한마포과 - 자원순환과 - 맑은환경과 - 공원녹지과	
2025. 6. 12.(목)	○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 - 주택상생과 - 도시계획과 - 건축지원과 - 부동산정보과	
2025. 6. 13.(금)	○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- 보건행정과 - 위생과 - 건강동행과 - 의약과	

6. 감사요령

감사는 복지동행국과 환경녹지국 및 도시관리국, 보건소 각 과, 동 주민센터, 마포복지재단 별도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응답, 서류 제출 요구와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며,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(증인)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다.

7. 감사 진행순서

- 감사실시 선언
- 위원장 인사
- 증인선서
- 피감사기관 부서장 인사 및 간부 소개
- 주요 업무 보고·청취
- 감사실시(질의 및 답변, 현지확인, 관계자의 증언)
- 감사종료 선언

8. 유의사항

-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하지 못한다.
-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.
-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9. 감사결과 보고

가.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

- ① 감사의 목적, 기간, 대상기관
- ② 감사실시 경과
- ③ 주요 감사실시 내용
- ④ 감사결과 처리의견(시정·처리 요구사항, 건의사항 등)
- ⑤ 기타사항

나. 감사결과 보고서 위원회에 보고 후 의결로 채택

다. 본회의 의결로 승인

10. 행정사항

- 본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이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하에 작성 시행한다.
- 사정에 따라 감사 일정 및 감사 장소, 감사반 변경, 감사대상기관의 축소 등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.
- 본 계획서를 변경할 경우,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